

상법 본회의 통과 후 추가 발의 법률안 분석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은 정부로 이송, 7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제382조의3은 7월 22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7월 22일에 공포된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은 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②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3분의 1로 상향, ③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를 적용, ④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입니다.

이 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며, 독립이사과 3% 룰에 관한 사항은 공포 1년 후인 2026년 7월 23일,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독립이사 의무 선임비율은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됩니다.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에 대한 개정은 위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 법률안 통과 직후인 7월 11일에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의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후속 과정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 발의 현황 (7월 2일 ~ 7월 17일)

의안번호	제안일	법률안명	발의자
2211209	2025-07-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2211373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2211460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2211463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2211471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2211484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2211494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¹⁾
2211517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1)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 전후로 추가 발의된 8건의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쟁점별로 해당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1. 집중투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1517)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신장식 의원안(2211517)은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이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중투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상향)를 다루고 있는 이정문 의원안(의안번호 2205704)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식 의원안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분리 선임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정문 의원안보다 한층 강화되었으나, 2020년에 분리선임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는 이정문 의원안에 대해서도 제도 정착 기간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신중론, 재계의 강한 반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문 의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2. 자사주 소각 의무 및 예외 사유

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의안번호 2211373)	상법 제542조의14(신설) -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 예외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공모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허용 - 예외 보유는 취득 직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사주 보유 승인 시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 부칙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 - 개정법 시행 전에 보유한 자기주식도 개정규정 적용

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1460)	상법 제342조(개정) -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6개월 이내 소각 -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양도, 임직원 에 대한 성과보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보유 허용 상법 제530조의10 제2항(신설) -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부칙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 - 제342조는 개정법 시행 후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적용 -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단, 예외 목적 보유의 경우는 제외) 소각 - 제530조의10 제2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7월 3일 이후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된 법률안은 총 2건으로, 김남근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이 있습니다. 두 법률안 모두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간:** 차규근 의원안은 6개월 이내, 김남근 의원안은 1년 이내(단,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5년 이내)로 소각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② **예외 사유:** 두 법률안은 모두 임직원의 성과보상을 자사주 보유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법률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김남근 의원안: 임직원에 대한 보상, 우리사주 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공모 발행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 차규근 의원안: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차규근 의원안은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인적분할 시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대주주가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분할 후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④ 김남근 의원안은 예외적인 사유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소각하여야 함), 이 때 대주주의 의결권(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합산)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배임죄 보완 관련 법률안 (형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

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1209)	• 경영판단의 원칙 규정 신설(안 제382조이5),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 적용 제외 •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의 범위를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211287)	•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20인) (의안번호 2211471)	• 형법 업무상 배임죄와 동일한 상법 특별배임죄 규정 삭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11470)	•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배임죄 적용 배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1484)	• 배임죄에 대한 「형법」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현행법상의 특별 배임죄 조항의 구성요건도 동일하게 개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1485)	• 배임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

고동진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모두 배임죄에 관한 개정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고동진 의원안과 김태년 의원안은 대법원이 배임죄 판단의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고동진 의원안은 형법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상법에 “회사의 이익을 위한 신중한 행위”를 추가한 반면 김태년 의원안은 형법에만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고동진 의원안과는 달리 “합리적인 판단”뿐 아니라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관계 상충” 요건을 추가한 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고동진 의원안과 김태년 의원안 모두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이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고동진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추가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4. 소액주주 권익 보호 관련 법률안

법률안	주요 내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11463)	- 주주제안 기간을 주주총회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 보유 주주에게 주주제안권 부여 -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 통지 의무 부과

이소영 의원안은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 보유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을 허용하고, 이러한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해 회사가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총회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시사점

앞에서 언급된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두가지 사안은 7월말 국회에서 논의, 법사위 최종안이 마련된 다음 8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룰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한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하여 감사위원회의 법적 권한(자료 제출 요구권, 업무 조사권 등)을 활용하여 회사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내부에서부터 면밀히 감시하며, 나아가 기업의 핵심 전략을 포함한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안의 소각 의무기간은 다양하지만 모두 자사주 취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를 통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강화하던 기존의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배임죄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되는 등 향후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문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이상, 충실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으로서는 이사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구축

Yulchon Legal Update

하고,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목적과 판단의 적절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갖추는 등의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 센터

Contact

은성욱 변호사

02-528-5305

sweun@yulchon.com

김건 변호사

02-528-5308

gkim@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위춘재 변호사

02-528-5973

cjwee@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윤여훈 전문위원

02-528-5271

summeryoon@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